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**보 도 자 료**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2년 2월 3일(목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2.3.(목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2. 1. 28.(금)	담당부서	에너지안전과 전력산업정책과
담당과장	홍순파 과장(044-203-3980) 강감찬 과장(044-203-3880)	담 당 자	정해진 사무관(044-203-3984) 권대혁 서기관(044-203-3984) 최민지 주무관(044-203-3986)

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 2.3(목) 국무회의 통과

- 소규모 신·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 실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문승욱)는 '**소규모**(5천만원 미만) **신·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외부감리가 아닌, 전기안전관리자의 자체감리**를 허용하는 **「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안**이 **2월 3일**(목) **국무회의에서 통과**됐다고 밝힘

○ 이번 개정은 「**신재생에너지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**('21.6)」 「**제8차 신산업 현장애로규제혁신방안**('21.11.25)」에 따른 후속조치이며,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

□ 이번 개정의 목적은 **신재생에너지설비와 관련한 부품의 신속한 교체 유도*로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**하는 한편, **소규모 사업자의 외부감리 발주에 따른 시간·비용 발생의 부담을 경감**시키기 위한 것임

* (예시) 그동안은 태양광발전소내 25kW 인버터교체시 제품가격은 350만원, 공사비용은 100만원인데 반해 외부감리비용이 최대 100만원 수준이어서 적기교체 지연 사례 발생

○ 한편, 정부는 **공사규모, 전기안전관리자의 감리결과 등을 사용전검사 시 전기안전공사에서 확인**토록 하여 이번 개정한 제도의 **오·남용도 방지**할 계획임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정해진 사무관(☎ 044-203-4419), 전력산업정책과 권대혁 서기관, 최민지 주무관(☎ 044-203-3984, 398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